



고용노동부

대전지방고용노동청



수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사회적기업 귀중
(경유)

제목 정관등 변경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일정 안내

1. 귀 사회적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(정관등)에 "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"고 규정하고, 동법 시행령 제14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3. 위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를 통한 일제정비 이후 '23.11.1.(수)부터 **지연 신고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매월 부과** 될 예정입니다.
4. 이에,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**자진신고 기간을 운영**하오니, **정관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신고**하시어 지연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**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**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자진신고 운영 기간 : ~ '23.10.31.(화)까지
 - * 자진신고 기한 내 그간 미신고한 정관등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
 - 나. 신고방법 :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한 신고
5. 또한, 「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붙임으로 알려드리오니 **해당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**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(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관련) 1부. 끝.

